

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1] <개정 2026. 6. 23.>

본청 실·국의 설치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구분	실·국의 수
1.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	3실·국 이상 5실·국 이하
2. 경기도 교육청	4실·국 이상 6실·국 이하
3. 그 밖의 교육청	2실·국 이상 3실·국 이하

비고

1. 실·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·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·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2. 위 표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다.